

미국 손해보험의 방재활동(IRI)

채 수 주
(감사실장)

1. 머리말

손해보험산업은 방재와 같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업종별 또는 개별물건의 방재수준에 따라서 적정 보험료를 산출해야 함은 물론이고 손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방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에는 안전방재활동이 정부 주도적으로 전개되었으나 자율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에는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방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손해보험회사에서 많은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효율자유화와 브로커제도의 도입으로 보험사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결국 보험가격은 인하될 수 밖에 없다. 저렴한 보험가격으로도 보험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손해율을 낮추어야 한다. 손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손해보험회사의 방재활동은 이제 더 이상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며 보험수익을 얻기 위한 경영 그 자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보다 보험이 앞서 발달한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손해보험회사가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필자는 작년 10월 HPR(Highly Protected Risk)보험의 인수조직인 미국 IRI(Industrial Risk Insurers)에서 방재교육을 수강하고 IRI의 업무현황을 조사할 기회가 있었다.

IRI의 설립배경과 방재업무내용, IRI에서 취급하는 HPR보험 등을 통하여 미국 손해보험회사가 어떤 형태로 방재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IRI의 설립배경

1890년 전기, 전화, 자동차 등 그 당시의 새로운 산업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11개 미국 손해보험회사가 FIA(Factory Insurance Association)를 설립하여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규모 첨단공장에 대한 재산보험을 공동인수하기 시작하였다. 1891년에는 중서부지역의 재산보험을 취급하는 Western FIA가 설립되었으며 수년 후에 FIA와 WFIA는 스프링클러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NFPA의 창립멤버가 되었다. 국가경제성장과 더불어 FIA도 발전하였다. FIA의 점검은 자세하고 완벽하기로 유명하며 방재시설의 개선, 손실경감, 낮은 효율을 통하여 산업체에 이익을 주었고, 제1차 세계대전시에는 미국 군사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전문가로서 FIA점검원들이 참여하였다.

1918년 석유산업의 보험과 방재업무를 전담하는 OIA(Oil Insurance Association)가 설립되었다. 1943년에는 미국 각 지역에 활동하고 있던 FIA성격의 보험조직인 WFIA와 Pacific FIA를 통합하여 전국적인 거대조직으로 발전하였다.

미연방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후 행정력이 부족하여 국내공장의 관리를 FIA를 중심으로 한 보험인수기관에 그 역할을 담당시켰으며 특기할만한 사항은 연방 방위조직의 보험처리 및 비상계획을 FIA에 위임했다는 점이다. 국가권력을 위임받고 3개의 협회가 합병되어 규모가 확대된 협회는 전국적인 손해예방활동을 위해 보다 많은 사무실을 개설하고 연방행정조직과 공동으로 화재서비스 사업을 확대하였다.

1975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FIA와 OIA가 통합되어 IRI라는 조직을 탄생시켰다.

FIA 통합과 IRI 설립의 기본적 배경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토양과 관계되어 있으며 주요 설립 목적을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Capacity의 강화이다. 석유관련물건 및 거액의 설비가 설치된 공장의 인수에는 단독의 보험회사로는 불안하다는 것이다. 둘째, 경비절감이다. 첨단 공업기술을 갖춘 거대한 산업시설의 점검에는 우수한 엔지니어 양성이 필수적인데 단독의 보험회사로는 경비가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다. 셋째, 이익 실현이다. 수익성을 향상시켜 최대한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3. IRI의 조직 및 방재업무내용

IRI는 최종적으로 FIA와 OIA라는 2개의 협회가 통합된 Pool형태 보험인수기관으로서 HPR 물건의 재산보험을 인수하고 방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RI는 미국 모든 주의 보험면허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보험회사가 회원사로 되어 있으며 매년 변경되어 재구성되는데 현재 25개사가 가입되어 있다. 동경해상화재도 회원사로 되어 있다. 회원사와의 관계는 일반 협회와 유사한 점이 많다.

IRI가 회원사에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내용은 HPR 부보물건에 대한 언더라이팅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 물건의 손해예방을 위하여 방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이밖에도 손해율 등 언더라이팅

자료, 시험·연구자료, 엔지니어링 전문지식 및 위험평가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IRI는 미국을 6개의 언더라이팅 지역으로 구분하여 11개의 주요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IRI보험자와 브로커 또는 대리점에 재산보험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RI는 모든 공장건물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여 인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석유화학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선호하지 않는다. 고층빌딩도 취급하는데 건축구조가 양호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등의 몇가지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외국물건을 담당하는 IRI Corporation이 있으며 독일, 일본, 영국 등 세계 6개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IRI방재활동의 핵심은 방재조사(Loss Prevention Survey)이다. 방재조사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번째 목적은 손해예방이다. 즉, 피보험자가 손해예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개선을 권고한다.

다음으로는 HPR 효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건 인지를 파악하고 물건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과 유사한 점이 많다.

IRI의 방재조사는 현장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일부 소형물건을 제외하고 전 부보물건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다. 조사횟수는 물건의 규모 및 위험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대규모 위험물건은 연 2회 실시되고 있으며 위험성이 낮은 소규모 물건은 1-3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다.

조사내용은 피보험자의 방재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건물구조·용도·공정·주요장치 등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위험물·가스 또는 공정관련 특수위험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책을 수립하며, 각종 소방시설의 적정 설치 및 작동여부를 파악하고, 전기시설·냉난방 등의 건물부대설비 및

방화벽 등의 건축방화설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현장조사후 점검자는 IRI기준, NFPA기준, UI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선권고사항(HPR 요건에 관한 사항과 방재사항으로 구분)을 작성한다. 작성된 현장조사 보고서는 언더라이팅 담당부서에 제공되어 HPR물건의 자격여부, 요율산출, 자사 인수액 결정, 인수조건 및 디덕티블을 결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계약자와 브로커에도 제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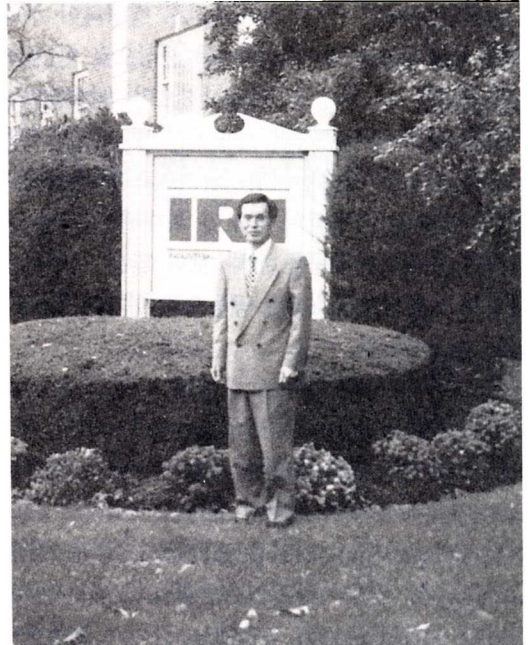
IRI는 방재조사에서 뿐 만 아니라 화재연구 및 리스크 평가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다. IRI는 독자적인 화재모델을 개발하여 석유관련 물건의 인수 및 일반공장의 인수 실무에 적용해 오고 있다. 석유관련 화재모델은 IRI방재업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기술수준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석유화학산업의 PMI(Probable Maximum Loss)산출에 개량형 화재모델을 응용하고 있다. 예상최대손실액은 HPR물건의 인수 및 보유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지표이다.

또한 IRI는 전 계약물건에 대하여 사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IRI가 설립된 이래 100년 이상 동안의 개별 계약자에 대한 사고정보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DB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사고요인을 망라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IRI에서는 오래전부터 방재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보험계약자, 회원 보험회사, 브로커, 대리점, 요율기관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화재의 기본개념에서부터 현장실무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4. HPR보험

HPR이란 고도의 방재설비가 설치된 우량물건을 지칭한다. 낮은 보험요율로 광범위한 담보범위를 충족시키고 있다. HPR보험은 미국의 재산보



험분야에서 일반화된 보험형태로서 이 보험의 특징은 보험가격이 저렴하고 보험회사의 방재전문 엔지니어가 정기적으로 부보물건에 대한 방재점검을 실시하여 계약자에게 지속적인 방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HPR여부와 인수한도를 결정하는데는 몇 가지의 기본요건이 있다. 이 요건은 현장정보에 근거하고 있으며 HPR로 분류되기 이전에 6가지의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경영관리가 손해방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을 것.
- 건물구조 및 유지관리가 양호하고 위험도가 중간 미만일 것.
- 건물구조 및 용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방재설비(스프링클러 등)가 갖추어져 있을 것.
- 특수한 위험이 확인되면 철저히 평가, 적절히 보호될 것.
- 적절한 수원, 옥외소화전 등 옥외방재설비가 설치되고 양호한 비상조직을 갖출 것.
- 순찰이나 인정된 전자감시설비와 같은 실내·외의 감시체제가 있을 것.

상기의 HPR기준을 만족시키는 물건은 특정용도에 근거하여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HPR물건을 인수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주정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한다.

- 미국의 모든 주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 계약자에게 양호한 방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위험상태에 따른 적절한 언더라이팅 능력이 있을 것.
- 대규모 물건을 인수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력이 있을 것.

미국에는 4,000여개의 보험회사가 있으나 이중 HPR물건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IRI, FMS, KEMPER그룹이 미국 HPR보험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PR보험에 가입하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방재엔지니어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받아 기업의 위험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가입이 가능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낮은 보험요율로 물건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험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므로 영업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HPR보험은 방재서비스가 전제된 보험으로써 보험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제도인 것이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IRI의 방재업무내용과 IRI에서 취급하고 있는 HPR보험을 통하여 미국의 손해보험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방재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기술하였다. 보험선진국인 미국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보험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유명하며, FMS(Factory Mutual System)는 상호보험회사로서 IRI와 같이 HPR보험을 취급하면서 화재연구분야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수방화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보험업자가 설립한 UL(Underwriters Laboratory)은 시험연구기관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단체이다. 또한 ISO(Insurance Service Office)는 요율산출기관으로서 미국 전지역에 걸쳐 재산 및 상해보험에 관련된 언더라이팅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축적된 통계자료와 함께 보험회사, 대리점, 브로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같이 미국 손해보험산업은 업계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관련단체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손해보험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지만 단독으로 각 보험회사가 수행하기에는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며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체들이 실용주의 성격이 강한 미국의 사회체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설립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보험시장개방으로 외국사가 진출하고 요율자율화와 브로커제도의 도입으로 영업경쟁이 가속화되어 보험가격이 종목별로 대폭 할인되고 있다. 낮은 보험가격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재관리로 손해율을 낮추고 사업비율을 절감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손해보험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같은 보험단체를 육성하여 업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